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6. 15 선고 2023가단1024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서성훈

피고B

변론 종결2023. 5. 25.

판결 선고2023.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23. 1. 1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3. 1. 19. 접수 제2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은 2022. 9.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C, 피고, E가 있다.

나. F주식회사의 2023. 1. 13.자 대위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C, 피고, E 앞으로 2022. 9.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19.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접수 제2910호로 2023. 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15927호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이 있는데, C은 2023. 1. 1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22. 9. 29.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2느단320호로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31.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C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이미 발생하였고, C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도 참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하경

별지